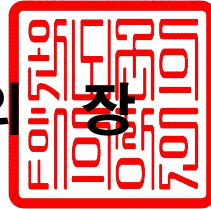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3년 3월 3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발 의 자 : 허궁희 의원

3. 제정이유

-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책무(안 제3조)

- 서예교육의 지원(안 제4조)
-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(안 제5조)
-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·단체의 지원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5. 관련법령 :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

6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3. 3. 3. ~ 2023. 3. 8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36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조례안 예고명 |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| | |
| 의견 제출자 | 성 명 (개인/단체) | | 전화번호 |
| | 주 소 | | |
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「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 의장 귀하

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군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서예교육의 지원) ① 군수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·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교양강좌,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·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군수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강의료와 수당
2.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
3.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
4. 그 밖에 군수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6조(서예진흥을 위한 법인·단체의 지원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서예문화를 육성·발전시키는 사업
2.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·육성·활용하는 사업
3.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
4.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
5.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완도교육지원청, 서예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